

#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77,174,004	38,315,220
일반회계	1,193,617,213	35,808,516
특별회계	83,556,791	2,506,704
기타특별회계	83,556,791	2,506,70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54,598	73,638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6,890,238	506,7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6,101,471	1,083,044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4,717,569	741,527
주차장 특별회계	2,104,535	63,136
수질개선 특별회계	65,837	1,975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6,819	805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81,680	26,45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14,044	9,42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872,411천원(일반 4,000,000, 재해·재난목적 29,872,411)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